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654호 2025. 10. 13.(월)

|        |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|
| 선<br>람 | 기 관 의 장 |
|        |         |

고 시

○하천점용 허가 고시(예천군 고시 제2025-117호)

|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회<br>람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(전화 650-6071)

## 하천점용허가 고시

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10월 13일

예 천 군 수

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구 분          | 하천점용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하 천 명        | 한천(지방하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점 용 자<br>주 소 | 김학동(재단법인 예천문화관광재단)<br>(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209-15, 문화회관2층) |
| 위 치          |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248,310-1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점용면적         | 27,500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점용목적         | 토지의 점용(2025년 예천활축제장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업개요         | 축제장 운영에 따른 임시시설물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점용기간         | 2025년 10월 13일 ~ 2025년 11월 07일                         |